#### 【붙임 8】

#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 안내

### 1. 사업 목적

o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 2. 추진 근거

-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 o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 제2호(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 3. 사업명 :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 o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제도

## 4. 주요내용

-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ㅇ (지원내용) 사업주가 실제 부담한 훈련비의 50% 지원
  - \* 그동안 사업주훈련으로 수강할 수 없었던 다양한 훈련과정 지원
  - (지원 제외) <sup>①</sup>내일배움카드 과정, <sup>②</sup>사업주훈련 과정, <sup>③</sup>법정의무 훈련 (공통, 직무), <sup>④</sup>외국어 과정, <sup>⑤</sup>학위 취득 과정 <sup>⑥</sup>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힐링, 스트레스 관리 등), <sup>⑦</sup>포럼, 세미나,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 <sup>®</sup>정부 지원으로 훈련비를 지원 받는 과정
    - \* 제출한 훈련과정에 따라 원격훈련 등 일부과정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원격훈련 과정 지원요건 세부사항〉

- 과정 구성 시 집체훈련 50%, 원격훈련 50%(최대)로 구성
- 원격훈련의 경우 비대면쌍방향(실시간) 형태에 한해 지원

- ㅇ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주훈련 지원한도와 동일
- o (훈련방법 및 시간) 제한없음
- (지원항목) 훈련비
  -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후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 화급
  - 다만, 훈련비 지급단계에서 직무와 무관한 훈련 등 정부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 환급이 거부될 수 있음
- (참여기간 및 훈련비 신청) '25.3~12월 사이에 훈련받은 과정에 한하며,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 참여방법

#### ① 훈련 참여

기업→훈련기관 근로자가 원하는 과정 선택 참여(훈련비 사업주 납부)

#### ② 훈련비 신청

기업→공단 영수증과 수료증 첨부하여 훈련비 신청

#### ③ 훈련비 지급

공단→기업 지원대상 여부와 증빙서류 확인하여 훈련비 지급

o (훈련비 신청)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한 후 훈련비 납입 영수증과 수료증을 첨부하여「고용24」를 통해 훈련비 신청

#### 〈훈련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 \*[붙임1] 양식 참고
- 2.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붙임2] 양식 참고
- 3. 훈련비 납입 영수증 \*하단 표 참조
- 4. 훈련 수료증(필수 포함사항: 과정명, 과정 개요, 교육 방법)
  - 원격(혼합)훈련의 경우, 원격·집체 비중 및 비대면쌍방향(실시간) 과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할 것

#### 〈훈련비 납입 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서류〉

- 1. 전자계산서(영수함으로 기재된 것)
- 2. 카드매출전표+카드 앞면 복사 사본(사업주명 확인)
- 3. 현금영수증(사업주나 법인번호로 발행)
- 4. 전자계산서(청구함)+훈련기관 발행 수납확인서(또는 금융기관 발행 계좌이체 내역)
- o (훈련비 지급) 기업에서 사전 등록한 계좌로 지급
  - \* 기업이「고용 24」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 훈련비 지급 계좌 사전 등록(필수)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 4upchu@hrdkorea.or.kr

- 유선 : 052-714-8276

## 붙임 1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 확인서

# 근로자 훈련 참여 사업주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훈 련 사 항:

연번	성명 (훈련생)	훈련과정명	전화번호	서명 (훈련생)

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14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사업』에 당사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 보험법 제116조,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 년 월 일

기업명: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 2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 근로자 훈련 참여 훈련기관 확인서

관 명: 기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훈 련 사 항:

연번	훈련과정명	사업장명 (훈련생 소속)	성명 (훈련생)
			-

본 기관은 고용보험법 제114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등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사업』을 통해, 상기 훈련사항에 기재된 훈련생(근로자)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훈련사항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17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 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5 년 월 일

> > 기관명: (직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중소기업 근로자주도훈련 지원 제외 훈련과정

- 1. 내일배움카드, 사업주훈련 등 이미 통합심사를 받아 운영하는 과정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받은 과정과 과정명, 커리큘럼이 동일한 과정)
- 2. 공통 법정훈련\* 및 직무 법정훈련\*\*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직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 법령에서 교육 대상의 직무가 특정된 교육이거나 개별 사업주에 대한 평가 또는 인증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에 교육·훈련 근거가 있는 교육)
- 3. 외국어 과정(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학 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과정)
- 4. 학위 취득 과정(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등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 5.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힐링, 스트레스 관리 등)
- 6. 포럼, 세미나, 연수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정
- 7. 이미 정부 지원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는 과정
- \* 제출한 훈련과정에 따라 원격훈련 등 일부과정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